

## 신현원창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신현원창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2022년 11월 14일(월) ~ 2022년 11월 30일(수) (평일, 09:00~18:00)
2. 접수장소: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 032-718-3822 담당직원 : 안유화 )
3. 접수방법: 방문접수 (2022년 11월 30일(수) 18:00시 접수분에 한함)
4. 모집인원: 24명 ※공고일 이후 추가 결원 발생시, 모집인원은 선정 당일 결원 수로 함
5. 자격요건 (가. ~ 다.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공고일 기준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나.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자 [접수 마감일 18:00 기준]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공고일 전일 기준]

- 신현원창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신현원창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신현원창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신현원창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법인, 단체에 소속된 사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정될 수 없음

### 6.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 (붙임 2) 또는 추천서 (붙임 3) 1부.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붙임 4) 1부.
-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 수료증(6시간)
  - 온라인 교육 : 해당 사이트 수료증 출력 제출
  - 오프라인 교육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 이수 별도 확인
- 신현원창동 소재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구 분	제출서류
사업장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가능)
사업장 종사자, 임직원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기타	기타 확인 가능한 서류

## 7.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릅니다.

## 8.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 → 공개 추첨(모집정원 초과시)  
→ 위원 선정

## 9. 결과통보: 선정 결과 등 홈페이지 게시 및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보

## 10. 기타사항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한차례 연임가능) 당해 모집 건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024. 12. 31.까지**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또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22조(위원의 해촉)에 따라 위촉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 교육과정
  - 서구 주민자치 신규 아카데미 운영

※교육장소 :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내 강의실 또는 줌(ZOOM)회의실

날짜	교육 시간	주제	교육 차시	진행 방법
11/16	14:00~17:00	주민자치 이론	1차	대면
11/17	14:00~17:00	주민자치 사례	2차	대면
11/23	14:00~17:00	주민자치 이론	1차	대면
11/24	14:00~17:00	주민자치 사례	2차	대면
11/18	17:00~20:00	주민자치 이론	1차	비대면
11/25	17:00~20:00	주민자치 사례	2차	비대면

- 이외 주민자치 기본교육 이수 과정 (인터넷강의)

주관	주소	교육인정
인천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www.인천주민자치.kr	3시간
인천배움캠퍼스	incheon.hunet.co.kr	3시간

## 11. 문의사항: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032-718-3822)

- 붙임 1. 신청서 1부.  
2. 추천서 1부.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2022년 11월 14일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원창동장

## [붙임 1]

### [관련조례]

#### 제7조(위원의 자격)

-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정될 수 없으며, 해당 동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명 자료 제출)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법인, 단체에 소속된 사람
-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8조(위원의 선정)

-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 추천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40대 이하가 전체 위원의 15퍼센트 이상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 ② 제1항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단,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은 최소 2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같음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추천으로 정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 ⑩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의무)

-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참석한다.

제19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0조(위원의 임기 등)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종료 후에는 제8조의 선정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 ②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5.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현원창동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구 주민자치회 위원회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되며, 관련 업무처리 용도 외에는 절대 이용 및 제공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상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업 등
-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요건 확인 및 운영 관리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를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부터 4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사업 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사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상 주소,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직업 등 인적사항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 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사업관리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부터 4년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및 분과위원 위촉 대상에서 제외됨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오

제공받는 자	인천광역시 등 행정기관,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통계수집, 정책 개선 위한 연구 기초자료,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정보제공, 위원 상호 간 정보제공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 주소, 연락처, 직업, 이메일 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중 및 임기 종료 후 2년

20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 주민자치위원 자격 여부

주민자치위원 신청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모집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결격사유가 있을 시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음

20    년    월    일  
확인자 (서명)